

『미국, 과불화알킬·다중불화알킬 물질(PFAS) 보고 및 기록 보관 제출 시작일 변경』

2026. 05. 12.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28, 29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449,776 (2025)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TSCA 제8(a)(7)조에 따른 과불화화합물(PFAS) 보고 및 기록보관 규칙의 데이터 제출 시작일을 연기하여 EPA의 보고 도구 안정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한 행정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보고자의 준비 시간을 보장하고 고품질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함
- (적용범위) HS 코드 제28류(무기화학품) 및 제29류(유기화학품) 등을 포함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 또는 PFAS 함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모든 개체

□ 주요 내용

- (제출 일정 및 기한 조정) 보고 시작일을 2027년 1월 31일(또는 차기 실질적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함. 일반 보고자는 시작일로부터 6개월, 제품 수입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는 12개월의 제출 기간이 부여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럽) REACH 전면 제한안 추진을 통해 약 10,000종 이상의 PFAS 화합물에 대한 단계적 퇴출을 검토 중임. POPs 규정을 통한 엄격한 제조·사용 금지와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을 통한 공급망 투명성 강화를 병행함
- (중국) '신오염물질 거버넌스 행동 계획'에 따라 고위험 PFAS의 제조 및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강제성 국가 표준(GB)을 통해 관련 물질의 식별 및 관리를 강화하며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음
- (일본) 화학물질심사법(화심법) 상 제1종 특정화학물질 지정을 통해 PFOS, PFOA 등의 제조·수입을 금지함. 식수 및 수질 모니터링 목표치를 설정하여 환경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chemSHERPA를 통한 정보 공유를 권고함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보고 시작일을 2027년 1월 31일로 연기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행정적 여유를 제공함. 이는 행정명령 14192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로, EPA가 보고 시스템(CDX)을 안정화할 시간을 확보함에 따라 제출 데이터의 정확도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권고사항) 2027년 보고 시작 전까지 발표될 후속 최종 규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특히 2011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15년 치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실사(Due Diligence)에 집중 투자하고, 시스템 숙달을 통해 미준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행정·준수 부담 가중) 기한은 연기되었으나 2011년 이후의 모든 PFAS 제조·수입 기록을 소급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되어 데이터 검색 부하가 상당함. 보고 도구의 요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작성 자료의 재작성 리스크가 상존함
- (비용·준수 리스크) 15년 치 데이터를 규정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 및 행정 비용 발생이 불가피함. 특히 소규모 수입업자는 12개월의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데이터 확보 실패 시 최종 단계에서 규제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대응 방안

- (중소기업) 2011년 이후 PFAS 함유 제품 수입 기록을 조기 식별하고, 소규모 업체용 12개월 확장 기간을 활용해 업무를 분산하고, EPA 핫라인 등을 통해 실무적 병목 현상에 대비
- (중견기업) 15년 치 제조 히스토리를 조기 확정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2027년 보고 전 확보된 데이터를 EPA 요구 형식(이산 역량 문장 등)으로 변환하는 내부 검증 절차 수립
- (대기업) 사내 EHS 시스템에 PFAS 이력을 통합하여 보고 업무를 자동화하고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고, 차기 규칙에서 확정될 예외 조항 및 보고 범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 극대화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관련 적합성 평가 정보	6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7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7
2.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9
V.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0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0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2
VI. 대응 방안	13
참고 1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24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Modification to the Start of the Submission Period for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Reporting and Recordkeeping Under TSCA 8(a)(7)	
	국문	TSCA 제8(a)(7)조에 따른 과불화알킬 및 다중불화알킬 물질(PFAS) 보고 및 기록 보관 제출 기간 시작일 변경	
WTO/TBT 통보문 번호	USA/1742/REV.2/ADD.1	통보국	미국
채택(예정)일	-	시행현황	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 04. 13.	통보일(고시일)	2026. 04. 14.
HS Code	28, 29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27,735,976 천불 (2025 기준)	對별행국 수출액 (천불)	2,449,776 천불 (2025 기준)
중소기업 품목여부	미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미국 환경보호청)	
	규제 목적	CDX 전자 보고 도구의 안정적 업데이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적 시간을 확보하여 규제 준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주요 내용	PFAS 보고 시작일을 2027년 1월 31일(또는 차기 규칙 발효 후 60일)로 조정하고 2011년 이후 제조·수입 기록 소급 보고 의무를 명시했으며, 소규모 제품 수입업자에게 12개월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고 체계를 합리화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PFAS 보고 시작일이 2027년 1월로 연기된 것은 기업의 단기적 행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2011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15년 치의 방대한 데이터 보고 의무는 여전히 기업에 기술적 및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차기 실질적 요건 규칙에 따른 세부 항목 변화와 고품질 데이터 제출 요구가 예상되므로 공급망 내 PFAS 이력을 선제적으로 자산화하고 보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이 필수적임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보고 시작일 연기로 단기적 부담은 줄었으나 2011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15년 치의 방대한 공급망 데이터 추적 및 보고 의무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됨 특히 업데이트되는 전자 보고 시스템(CDX) 숙달 및 고품질 데이터 확보 실패 시 규제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	
	대응 방안	2027년 보고 개시 전까지 EPA의 후속 지침 및 시스템 업데이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사 제품 내 PFAS 함유 이력을 사전에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함 소규모 수입업자 특례 등 완화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증빙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관리해야 함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본 개정안은 과불화화합물(PFAS) 보고 및 기록보관 규칙의 데이터 제출 시작일을 조정함으로써, 규제 대상 기업들이 개정된 실질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전자 보고 시스템인 중앙 데이터 교환(CDX) 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연과 대규모 공청회 및 서면 의견(약 8,500건 이상의 캠페인 의견 포함)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

□ 규제 요지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과불화화합물(PFAS) 보고 및 기록보관 규칙의 데이터 제출 시작일을 연기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 데이터 제출 기간의 시작일을 2027년 1월 31일 또는 실질적 요구사항을 담은 차기 최종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짜로 조정
- 일반 보고자에게는 시작일로부터 6개월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며, 제품 수입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게는 12개월의 제출 기간을 적용

□ 적용대상

- (HS 코드: 28)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HS 코드: 29) 유기화합품*

* 탄소 화합물을 주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

□ 시행일

-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이며, 데이터 제출 기간의 시작일은 2027년 1월 31일 또는 실질적 요구사항을 담은 차기 최종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짜로 함

2

규제 세부 내용

□ 적용제품

- HS 코드 제28류(무기화학품) 및 제29류(유기화학품) 등을 포함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 물질 및 시스템에 적용
 - 화학 물질 형태의 PFAS뿐만 아니라, PFAS가 포함된 제품(Article)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 등 제품 전반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에 해당
 - 소비재, 산업용 장비, 전자 부품 등 PFAS가 의도적으로 사용되거나 포함된 공정 및 완제품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고 의무를 부여

□ 규제 준수 대상

- 본 최종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 PFAS 물질 또는 PFAS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 포함)한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산업 분류에 속하는 개체는 보고 이행 의무가 발생함
 - (주요 산업 분류)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기준 유틸리티(22), 제조업(31~33), 도매업(42), 폐기물 관리 및 교정 서비스(562) 등
 - (소규모 제조업체) 40 CFR 704.3의 정의에 따른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제품(Article) 수입만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적용
 - (데이터 소급 및 실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제조 및 수입 기록에 대하여 TSCA 섹션 8(a)(2)에 명시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 보고 시스템(CDX)을 통해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세부내용

- (보고 일정 합리화 및 행정 절차 정비) 전자 보고 시스템 개발 지연에 따른 보고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대규모 공청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제출 시작일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함

- (IT 인프라 최신화) 중앙 데이터 교환(CDX) 내 PFAS 전용 보고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제출 시작 시점을 연기함
- (데이터 품질 고도화) 보고자가 최신 지침과 실사(Due Diligence) 도구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함

제출 대상 분류	시작일	기간	비고
일반 제조 및 수입자	2027년 1월 31일 (또는 차기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	6개월	TSCA 8(a)(7) 일반 보고 의무자
소규모 제품 수입업자	2027년 1월 31일 (또는 차기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	12개월	40 CFR 704.3 정의에 따른 소규모 업체

- (보고 방법 및 시스템) 규격, 제조 연도, 물질 농도 등을 조합한 전용 전자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식별력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함
- (전자 보고 의무화) 모든 정보는 EPA의 CDX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전송, 변환 및 거래되어야 함

3

관련 적합성 평가 정보

* 본 개정안은 2011년 이후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의 정보 보고 의무 시작일을 기존 2026년 4월에서 2027년 1월 31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별도의 인증 취득, 시험 또는 적합성평가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님에 따라 관련 인증 절차, 사후 관리, 표시사항 등 인증 관련 정보는 '해당사항 없음'

적합성 평가 개요

- 해당사항 없음

적합성 평가 대상

- 해당사항 없음

적합성평가 절차

- 해당사항 없음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유럽연합(EU)

- (현행 규정)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을 통해 PFOS, PFOA 등 고위험 PFAS를 엄격히 제한함. 특정 용도를 제외한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제품 내 함유량 한계치를 적용해 수입품을 강력히 통제함
- (도입동향) 2023년 제안된 PFAS 전면 제한안(Broad Restriction)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AC)가 2026년 3월 최종 의견을 채택함.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의 의견이 2026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유럽위원회의 공식 시행 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2026년 2월에는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 목록에 Bisphenol AF 등이 추가되며 PFAS 관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 중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을 통해 공급망 내 유해 화학물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2026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및 관련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에 대한 배출 규제가 화장품 및 산업재 분야까지 확대 적용됨

2 중국

- (현행 규정) '신오염물질 거버넌스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PFOS, PFOA 및 관련 화합물을 중점 관리 신규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함. 특정 기술적 용도를 제외한 제조, 사용 및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내외 유통을 상시 감시함

- (도입동향) 2026년 3월,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강화한 '에코-환경법(Eco-Environmental Code)' 초안을 발표함. 2025년 말 공포된 '제3차 중점 관리 화학물질 목록'을 통해 PFAS 규제 품목을 대폭 확대했으며, 기업별 PFAS 배출 한계치(PFOS '불검출' 기준 등)를 엄격히 규정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2026년 4월부터 미세플라스틱 및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단속법이 시행됨. 고위험 PFAS에 대한 포장 등급 관리 및 위험성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여 분류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음

3 일본

- (현행 규정) 화학물질심사법(화심법) 및 수도법에 근거해 PFOS, PFOA를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함. 허가받은 용도 외 제조·수입을 금지하며,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개정 내용을 법에 즉각 반영하는 기조를 유지함
- (도입동향) 2025년 12월 화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FHxS 관련 물질 117종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가 2026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됨. 또한, 2026년 4월 1일부터 수도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PFOS 및 PFOA가 정식 추가되어 리터당 50ng 이하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의무화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공급망 정보 공유 시스템인 'chemSHERPA'를 통해 PFAS 함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권고함. 2025년부터 미네랄 워터에 대한 PFAS 기준을 수돗물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식품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먹는 샘물 시장의 규제 수준도 상향됨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미국 (USA)	유럽연합 (EU)	중국 (China)	일본 (Japan)
근거법령 (최상위법)	독성물질관리법(TSCA) 섹션 8(a)(7)	REACH 규칙, CLP 규칙, ADR(도로위험물운송협정)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화학물질심사법(CSCL), 대기오염방지법, 소방법
규제부처	환경보호청(EPA)	유럽화학물질청(ECHA) 및 각국 집행기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제품안전질량감독관리기구	경제산업성(METI) 및 소방청
적용대상	2011년 이후 PFAS 제조(수입)자 및 함유 제품	EU 내 유통·운송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PFAS 포함)	9대 클래스별 위험 특성 검사가 필요한 위험물 전반	GHS 분류 기준에 따른 PFAS 등 특정화학물질 및 위험물
주요내용	과거 15년간의 제조량, 용도, 건강 및 환경 영향 데이터 보고	발암성 등 유해물질 엄격 관리 및 최저 노출 유지 원칙	강제성 국가 표준(GB) 도입 및 최신 GHS 지침 기반 분류	우선 대책 물질 지정 관리 및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정책
라벨 및 인 증 (추가)	전자 보고 시스템(CDX)을 통한 보고서 제출 의무	CLP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추진	3단계 포장 등급 부여 및 마름모꼴 라벨 부착 의무	JIS Z 7253 기반 유해성 분류 및 GHS 라벨 부착 의무
규제 특징	2011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데이터 수집	'No Data, No Market' 원칙하에 미등록 위험물 유통 엄격 제한	법적 강력 규제(GB) 및 공정 변경 시 정기 검사·재검사 의무	제조·저장·운송 전 과정의 등록 관리 및 통합 관리 지침 강화
핵심 기한 (Target)	2027.01.31. 보고 시작 (6~12개월간 제출)	2025.01. ADR 개정안 발효 및 2026. 신규 유해성 등급 도입	2025.08.01. GB 30000.1-2024 표준 전면 시행	2035년 국가 환경 목표 설정 및 2026년 최신 GHS 개정 반영

5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Modification to the Start of the Submission Period for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Reporting and Recordkeeping Under TSCA 8(a)(7)
관리기관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미국 환경보호청)
법적근거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통보문서	USA/1742/REV.2/ADD.1
주요목적	CDX 전자 보고 도구의 안정적 업데이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적 시간을 확보하여 규제 준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 결과
제출 일정 및 준수 기한	PFAS 보고서 제출 시작일은 2027년 1월 31일 또는 차기 실질적 요건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짜로 설정되어야 하며, 일반 제조·수입자는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함
보고 대상 및 소급 범위	2011년 1월 1일 이후 PFAS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수입 포함)한 모든 주체는 보고 대상이며, TSCA 섹션 8(a)(2)에 명시된 화학물질의 식별, 용도, 생산량, 부산물, 건강 및 환경 영향 등에 관한 15년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소규모 기업 특례 조항	제품(Article) 수입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제조업체(40 CFR 704.3 정의 기준)는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의 제출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역량을 고려한 차등화된 일정임
전자 보고 및 기록 의무	모든 정보는 EPA의 중앙 데이터 교환(CDX) 시스템 내 전용 전자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로 제출되어야 하며, 규제 기관의 검증에 대비하여 제출한 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실사(Due Diligence)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함.

○ 평가 항목별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IT 인프라 안정화 및 정보 품질 제고를 위한 정당한 정책적 목적을 가짐 보고 도구(CDX) 개발 지원을 해결하고 대규모로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필요성이 인정됨
비차별성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제품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규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PFAS 제조 및 수입자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표준화된 전자 보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형평성을 유지함
최소무역 제한성	기존 보고 마감일을 연기하여 기업의 즉각적인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Deregulatory action)의 성격을 가짐 특히 소규모 제품 수입업자에게는 12개월의 확장된 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적 및 행정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대응 시간을 보장함
투명성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최종 규칙을 공표하고 대외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함 대규모 공청회 및 서면 의견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마련하고 차기 최종 규칙에 대한 예고를 통해 규제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구분	애로유형 및 파급효과	구체적 발생 원인	영향경로
행정·준수	광범위한 소급 데이터 수집 및 행정 부담 가중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된 PFAS의 생산량, 용도, 건강 및 환경 영향 등 15년치 기록 보고 의무화	과거 기록 소급을 위한 막대한 인적·시간적 자원 투입 → 실사(Due Diligence) 활동 지연 시 기한 내 보고 실패 리스크 발생 → 규제 미준수에 따른 행정 제재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기술·데이터	완제품 내 PFAS 추적 및 시스템 숙달 난이도 상승	완제품(Article) 수입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고 대상 및 EPA 보고 도구(CDX)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내 PFAS 함유 여부 식별의 기술적 한계 → 업데이트된 전자 보고 시스템 활용에 대한 행정적 미숙련 발생 → 고품질 데이터 제출 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작성 요구 및 대응 비용 상승

○ 결론 및 권고 사항

- (규제영향) 본 최종 규칙은 PFAS 보고 시작일을 2027년 1월 3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존 마감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함 이번 개정은 보고 시점만을 조정하므로 기존 정보 수집 부담 추정치는 그대로 유지됨 특히 소규모 제품 수입업자에게는 12개월의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적 적응 시간을 충분히 보장함
- (권고사항) 2027년 1월 31일 혹은 차기 규칙 발효 후 60일 중 빠른 날에 보고가 시작되므로 관련 지침 업데이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제조 및 수입 기록에 대해 요구되는 상세 데이터를 사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하고, 향후 확정될 보고 범위와 예외 조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행정적 효율성 제고 및 보고 시작일 연기를 통한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정당한 목적으로 가짐 기존 보고 의무의 개시 시점만을 늦추는 규제 완화 조치로서 무역 제한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연방 관보 공표 및 차기 규칙 예고를 통한 투명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TBT 협정 위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6

대응 방안

□ 대응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제출 기한 확보 및 실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제품 수입업자에게 부여된 12개월의 제출 기간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PFAS 함유 실사 및 데이터 수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 * 행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EPA가 배포할 소규모 제조업체 전용 가이드라인과 보고 도구를 사전에 숙지하여 미준수 리스크를 방지함
중견기업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 및 일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이후의 PFAS 제조 및 수입 기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수행하여 2027년 1월 보고 시작 전까지 내부 데이터 정비 및 검증을 완료함 * 수정될 전자 보고 도구(CDX)의 요건에 맞춰 보고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차기 규칙 발효에 따른 제출 기간 변동 가능성을 관리함
대기업	전사적 대응 체계 및 규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간의 방대한 소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내 EHS 시스템과 EPA 시스템 간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디지털 관리 체계를 점검함 * 실질적 요건을 담은 차기 최종 규칙의 발효 시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고 범위 및 예외 조항 변화에 따른 공급망 대응 전략을 즉각 수정함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KnowTBT 포털(knowtbt.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KnowTBT 포털(knowtbt.kr)의 상담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 포털(Knowtbt.kr) 접속 → 상담신청)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계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견습 과정 완료 증명서, 관련 주나 연방 정부에서 인정한 면허, 또는 WIOA 제3조(53)항에 정의된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

기술 기반 직무 설명서 생성기—인재 시장과 관련하여 '기술 기반 직무 설명서 생성기'라는 용어는 주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도구를 의미합니다

29번 기준으로 정의된 노동력 기관 미국 법 3225a(a)(8).

인재 시장이란 29조에서 정의된 주 또는 주 인력 기관이 유지하는 디지털 상호 연결된 기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U.S.C. 3225a(a)(8).

- (하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 (둘) 통합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일) 학습 및 고용 기록;
 - (이) 자격증 등록부; 그리고
 - (삼) 기술 기반 직무 설명서 생성기;
 - (넷)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습자와 구직자, 고용주, 교육 및 훈련 제공자가 획득한 학습 진술서, 직무 설명서, 학위 및 비학위 자격증을 개별 역량 진술문으로 변환, 전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넷) 상호운용 가능한 형태로

규제이션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성취 및 학습 기록, 취업 권고.

직장 기반 학습은 20 U.S.C.

2302(55)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직장 내 산업계 또는 지역사회 전문가, 또는 교육 기관 내에서 특정 직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업무에 깊이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즉 교육과정과 교수에 부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규제 영향 분석: 이

규제 조치는 행정명령 12866호 3(f)조에

따라 예산관리국(OMB)의 검토를 받는

중요한 규제 조치가 아닙니다. 이 규제

조치는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한

행정명령 13563호에 따라 이 규제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의 이익이 비용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정의를 발행합니다.

국무부는 이 규제 조치가 행정명령

13563호의 원칙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규제 조치가 주, 지방,

부족 정부의 정부 기능 수행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는 이 규제 조치의 잠재적 비용과 양적 및 정성적 비용을 평가했습니다. 잠재적 비용은 법정 요구사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부서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입니다.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

우선순위와 정의는 부서로부터 재량 보조금 수여 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전혀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와 정의를 구현하는 이점은 관련 비용보다 크며,

이러한 최소한 비용이 존재하는 한, 우선순위와 정의가 더 높은 품질의 보조금 신청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정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신청서는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국무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와 정의가 없으면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더 많은 자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활동 수행 비용이 프로그램 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조금 수여자인 자격 신청자, 소규모 단체를 포함해 실행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 간 검토: 이 내용 조치는 행정명령 12372호와 34 CFR 79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문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에 대한 조기 통지를 제공합니다. 규제 유연성법 인증: 이 섹션은 규제 유연성법(5 U.S.C. 601 등)에 의해

요구되는 교육 부문의 소규모 법인에 최종 규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그 미국 중소기업법(USA) 규모 기준은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고, 운영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으며, 연간 총 수익이 7,000,000달러 미만인

사업체를 소규모 사업체로 정의합니다. 비영리 기관은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운영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은 소규모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공공 기관은 인구 5만 명 미만을 관리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이 규제 조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에 새로운 보고 의무나 준수 부담을 부과합니다. 잠재적인 영향은 미미하거나 간접적이거나 연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규칙은 5 U.S.C. 605(b)에 따라 상당수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류 작업 감축법: 우선순위와 정의에는 정보 수집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승인된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읽기 가능한 형식: 추가 정보 아래에 기재된 프로그램 연락처 담당자에게 문의 요청 시

장애인은 이 문서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요청자에게 리치 텍스트 형식(RTF) 또는 텍스트 형식(txt), USB 드라이브, MP3 파일, 점자, 대화자, 오디오 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또는 기타 접근 가능한 형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전자 접근: 이 문서의 공식 버전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문서입니다. 연방 관보 공식 판과 연방 규정집은 www.govinfo.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www.federalregister.gov 의 기사 검색 기능을 통해 연방 관보에 게재된 부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FR 문서 2026-07084 계속 4월 10일; 오전 8:45]

청구 코드 P

환경보호청

40 CFR Part 705

[EPA-HQ-OPPT-2020-0549; FRL-7902.4-02-OCSPPI]

RIN 2070-AL44

TSCA 8(a)(7)에 따른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보고 및 기록 보관 제출 기간 시작 시 수정

환경 보호청(EPA).

행동: 최종 규칙.

요약: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보고 및 기록 관리 규칙(PFAS 보고 규칙)의 보고 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최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PFAS 보고 규칙의 제출 기간은 2027년 1월 31일, 즉 다가오는 최종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60일에 시작됩니다

PFAS 보고 규칙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규칙, 더 빠른 시점이 있습니다.

날짜: 이 최종 규칙은 2026년 4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주소: 이 소건의 사건 기록은 사건 식별(ID) 번호 EPA-HQ-OPPT-2020-0549로 식별되며, 온라인에서는 <https://www.regulation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방문 안내와 사건 관련 추가 정보는 <https://www.epa.gov/docke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이 문의하세요:

기술 정보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Carolyn Hammack, 화학 정보, 우선순위 지정 및 유해물질 배출 부서(7406M), 환경보호청 오염 예방 및 유해물질 사무국, 12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460-0001; 전화번호: (202) 566-0521; 이메일 주소: Hammack.Carolyn@epa.gov.

일반 정보는 TSCA 지원 정보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핫라인, 굿윌 비전 센터프라이즈, 422 South Clinton Ave., Rochester, NY 14620; 전화번호: (800) 471-7127 또는 (202) 554-1404; 이메일 주소: TSCA-Hotline@epa.gov.

추가 정보:

일. 요약

하나. 이 행동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이 조치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연제된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범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독자들이 이 문서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틸리티(NAICS 코드 22);
- 제조업(NAICS 코드 31부터 33까지);
- 도매 무역(NAICS 코드 42);
- 그리고
- 폐기물 관리 및 정화 서비스(NAICS 코드 562).

이 목록은 기업의 유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EPA가 이 조치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법인들도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법인이 이 조치의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40 CFR에 명시된 적용 기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705.10과 705.12. 이 조치가 특정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 정보 문의**란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EPA는 유해물질관리법(TSCA) 제8조(a)(7)(15 U.S.C. 2607(a)(7))에 따른 권한에 따라 이 규칙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

2020 회계연도 국가방위권한법(FY 2020 NDAA)(공법 116-92, 섹션 7351)은 2019년 12월 TSCA 제8(a)조를 개정하여 제8(a)(7)조인 'PFAS 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TSCA 제8조(a)(7)는 EPA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어느 해든 [PFAS]인 화학물질은 제조한 모든 사람이 TSCA 제8조(a)(2)(A)부터 (G)까지 설명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

법률, 5 U.S.C. 553(d)(1)에 따르면, 기관은 '면제를 부여하거나 인정하거나 제한을 완화한다'면 규칙을 즉시 발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보고 시작 시점을 변경하여 제한을 완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셋.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EPA는 2025년 11월 13일 제안된 규칙(90 FR 50923 (FRL-7902.3-01-OCSP))의 개별 조치를 취하여, 40 CFR Part 705에 명문화된 PFAS 보고 규칙의 데이터 제출 기간 시작을 향후 최종 규칙의 발표일로부터 60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2027년 1월 31일로 백스톱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PFAS 보고 규칙의 데이터 제출 기간은 PFAS 보고 규칙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최종 조치가 발표된 날로부터 60일(또는 2027년 1월 31일—더 빠른 쪽)부터 시작됩니다. EPA는 궁극적으로 40 CFR 705.20(c)을 최종 개정 규칙의 발표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PA는 2027년 1월 31일을 추가 개정일로 지정하지만, 최종 개정 규칙—40 CFR 705.20(c) 개정안—을 그 대체 기준일보다 훨씬 앞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EPA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 일부를 최종 확정하든 말든 간에 최종 개정 규칙과 함께 이 대체 날짜를 나중에 제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는 PFAS 보고 규칙에 대한 제안된 실질적 개정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EPA는 현재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 기간의 법제화된 기간을 적용하여 현재의 6개월 제출 기간을 유지하고, 이 규칙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오로지 상품 수입 보고를 하는 소규모 제조업체(40 CFR 704.3에 정의됨)의 보고에는 추가로 6개월이 추가됩니다. EPA는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제출 기간 변경 및 보고 일정과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이 다가오는 최종 조치에서 이루어 집니다.

넷. 왜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이 조치는 EPA가 임시 최종 규칙(2025년 5월 13일 발표)과 제안된 규칙(2025년 11월 13일 발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답변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며, 이후 발표를 진행합니다. 적절하다면 최종 규칙, EPA는 2025년 5월 임시 최종 규칙에 대해 우편 캠페인으로부터 27건의 고유 의견과 639건의 의견을 받았으며, 2025년 11월 제안된 규칙에 대해 두 개의 우편 캠페인에서 거의 600건의 고유 의견과 8,500건 이상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EPA는 이러한 의견을 다루고, 최종 규칙을 작성 및 공표하며,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하고, 보고 도구를 업데이트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일에 대해 제공한

2025년 11월 13일 예정된 최종 조치의 발표일에 대한 제출 기간은 EPA가 제출 기간 시작을 나중에 조정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후 최종 조치는 보고 요구사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기간의 기간을 정의합니다. 이 규칙에서 제출 기간의 시작을 정하고, 이후 최종 조치에서 제출 기간을 정의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충분한 통지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준수 계획을 세우고, 실사 활동을 완료하며, 최종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 아동 환경 건강

이 조치는 EPA의 아동 건강 정책(<https://www.epa.gov/children/childrens-health-policy-and-plan>)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EPA는 이 조치가 인간 건강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다고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기존 보고 요건에 적용되는 제출 기간을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이.배경

2023년 10월 11일 최종 확정된 TSCA 8(a)(7) PFAS 보고 규칙은 2020 회계연도 NDAA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연제된 PFAS 또는 PFAS 함유 품목을 제조(수입 포함)한 모든 기관이 상세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EPA (88 FR 195 (7902- 02-OCSP))에 대한 정보입니다. 원래 제출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에 시작된 예정이었으며, 소규모 물품 수입업자에게는 연장된 마감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2024년 9월 5일, EPA는 직접 최종 규칙(89 FR 72336 (FRL-7902.1-02-OCSPP))을 공포하여 중앙 데이터 교환기소(CDX)에서 전자 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연으로 보고 마감일을 연기하여 제출 기간 시작을 2024년 11월 12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90 FR 20236 (FRL-7902.2-01-OCSPP)), EPA는 정보기술 개발 지연이 계속되고 이후 제안된 수정 규칙에 대해 공공 의견을 검토할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연장을 제공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연장으로 제출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EPA는 제안을 했습니다
TSCA 제8(a)(7) 조항 PFAS 보고 규칙(90 FR 50923 (FRL-7902.3-01-OCSPP))의 수정. 그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규정에 포함된 기존 데이터 제출 기간(2026년 4월 13일) 문구를 지적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까지)는 규정 개정에서 앞서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제화된 제출 기간과 범위에 대한 계획된 개정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날짜에만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 제출 기간이 시작되고 제출 기간 종료 시점을 다루지 않는 경우(즉, EPA가 현재 법제화된 제출 기간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현재 PFAS 보고 규칙의 제출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작되어 6개월, 즉 2026년 10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단, 소규모 제조업체는 PFAS 품목으로만 보고하는 업체는 2027년 4월 13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EPA는 제출 기간을 2027년 1월 31일, 또는 40 CFR 705.20(c)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60일 후(2025년 11월 제안서에 제안된 나머지 주체들을 다루기 위한 후속 규칙에 의해 추가됨), 더 빠른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로 수정합니다.

EPA는 이후 최종 규칙이 2027년 1월 31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최종 규칙에서 EPA는 최종 개정 규칙의 발표일을 40 CFR 705.20(c)의 날짜로 추가하고, 2027년 1월 31일 백스톱을 규정에서 삭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PA는 이 최종 규칙에 포함된 두 개의 개시 날짜를 분리 가능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 심사 시 60일 기한이 취소된다면, 2027년 1월 31일 백스톱은 유지된다; 반대로, 2027년 1월 31일 백스톱이 사건 발생 시 비워진다면

사법심사의 경우 60일 기한은 유지된다.

이후 최종 규칙에서 EPA는 또한 기관이 제안한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에 대한 보고 의무 면제 및 기타 잠재적 개정 사항을 포함할지 여부도 다룹니다.

삼. 대중 의견에 대한 반응

이 최종 규칙의 범위 때문에 EPA는 제출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의견을 요약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EPA는 제출 기간 기간이나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의 기타 실질적 변경 사항에 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며, 해당 의견이 제출 기간 시작에 초점을 맞춘 경우를 제외합니다. EPA는 제안된 규칙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후속 최종 조치를 취할 때 나머지 의견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출 기간과 관련해, 적절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이 제안된 규칙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후속 최종 조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변경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EPA는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의 제출 기간, 즉 보고 마감일에 관한 결정에 대한 조치를 2025년 11월 제안에 관한 후속 조치까지 연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대한 여러 댓글들里有 있습니다.

임시 최종 규칙과 2025년 11월 제안된 규칙은 EPA가 제출 기간의 시작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규칙 이속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 도구의 개발, 이속화 및 베타 테스트를 위해; 최종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또는 정교한 실사 노력의 완료; 데이터 제출물이 최고 품질로 제공되어 유용성을 높이는 것. 의견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5년 11월 제안된 규칙의 본질에 대한 최종 조치 후 5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의견 작성자들은 이번 조치와 함께 최종 확정 중인 EPA가 제시한 규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지했으며, 단서적으로 제안된 규정의 모든 예외 조항도 최종 확정되었다. 소수의 의견 제출자는 데이터 수집 지연이 진행 지연과 중요한 공중보건 보호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출 기간 시작 추가 지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PA는 2025년 5월 임시 결선에서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제안된 규칙(참조 1)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 최종 규칙 요약

EPA는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의 제출 기간 시작일을 현재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EPA는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에 따라 다음 최종 조치의 발표일로부터 60일 후로 데이터 제출 시작일을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백스톱 시작일은 2027년 1월 31일로 확정됩니다. 이 후속 최종 조치는 2025년 11월 1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제안된 규칙에 제안된 수정안을 다루고,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의 제출 기간도 제공할 것입니다. PFAS 데이터 보고 규칙의 제출 기간은 기관이 이 규칙에 대해 연속적으로 최종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 참고문헌

다음은 이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 목록입니다. 이 규칙의 기록에는 EPA가 고려하는 문서들과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문서들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가 정보 문의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SEPA입니다. 제출 기간 시작일 일정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년 3월.

육. 범법 및 행정명령 검토

이 법률과 행정명령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laws-and-executive-ord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행정명령 12866: 규제 계획 및 검토 및 행정명령 13563: 규제 및 규제 검토 개선

이 조치는 중요한 규제 조치가 아니므로 행정명령 12866(58 FR 51735)에 따라 관리예산국(OMB)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 10월 4일) 및 13563 (76 FR 3821, 2011년 1월 21일).

둘. 행정명령 14192 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의 해방

이 조치는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기존 준수 기한에 대한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 서류 작업 감소법(PRA)

이 조치는 PRA, 44 U.S.C. 3501 등에 따른 새로운 정보 수집 부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OMB는 기존 규정에 포함된 정보 수집 활동을 승인했으며, 지정된 OMB 통제 번호 2070-0217(EPA IC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번호 2682.02. 이 조치는 새로운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승인된 부담 추정치를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넷. 규제 유연성법(RFA)

저는 이 조치가 RFA(5 U.S.C. 601 이하)에 따른 상당수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 판단을 내리면서 EPA는 이 규칙에 대한 우려의 영향이 소규모 법인에 대한 중대한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며, 이 규칙이 규칙의 적용 대상인 소규모 법인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조치는 데이터 보고 규칙의 준수 시기를 지연시키고, 해당 조치의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준수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치가 모든 직접 규제받는 소규모 법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섯. 자금 지원 의무 개혁법(LIMRA)

이 조치는 UMRA, 2 U.S.C. 1531-1538에 명시된 1억 달러(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간 조정) 이상(1995년 달러 기준)의 미자금 임명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규모 정부에 유의하거나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어떤 주, 지방, 부족 정부나 민간 부문에도 강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섯. 행정명령 13132호: 연방주의

이 조치는 행정명령 13132호(64 FR 43255, 1999년 8월 10일)에 명시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가지지 않으며, 이는 주, 국가 정부와 주 간 관계, 또는 각 정부 수준 간 권한과 책임 분배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행정명령 13175호: 인디언 부족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이 조치는 행정명령 13175호(65 FR 67249, 2000년 11월 9일)에 명시된 부족 관련 영향이 없으며, 부족 정부, 연방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 관계, 또는 연방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 권력 및 책임 분배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연방 인정 인디언 부족 정부에 상당한 직접적 준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75호는 이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덟. 행정명령 13045: 아동 환경 보건 위험 및 안전 위험 보호

EPA는 행정명령 13045호(62 FR 19885, 1997년 4월 23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EPA가 행정명령 13045호 2-202절의 '적용 규제 조치' 정의에 따라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 보건 또는 안전 위험과 관련된 규제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이 행동은 환경 보건 위험 또는 안전 위험은 기존 보고 요구사항에 맞춰 제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인간 건강과 관련이 없으므로 EPA의 아동 건강 정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홉. 행정명령 13211: 에너지 공급, 배전 또는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관한 조치

이 조치는 행정명령 13211호(66 FR 28355, 5월 22일, 2001년), 행정명령 12866호에 따른 중요한 규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 국가 기술 이전 및 발전법(NTTAA)

이 규칙 제정은 NTTAA 12(d), 15 U.S.C. 272에 따른 기술 기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열하나. 의회 검토법(CRA)

이 조치는 CRA의 적용을 받습니다. 5 U.S.C. 801 이후, EPA는 각 하원에 규칙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미국 감사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5 U.S.C. 804(2)에 정의된 '주요 규칙'입니다.

40 CFR Part 705에 나오는 주제 목록

환경 보호, 화학물질, 유해 물질,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리뷰.

관리자.

서문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 40 CFR Part 705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파트 705—특정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대한 보고 및 기록 관리 요건

■ 1. 705부 관련 판결은 다음과 같이 계속 명시합니다:

권한: 15 U.S.C. 2607(a)(7).

■ 2. § 70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05.20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하나) 이 부분의 요구사항에 따라 EPA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해당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자가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위해, §§ 705.15 및 705.18(b)(연구 및 개발 기준)에서, 제출 기간은 2027년 1월 31일 또는 본 조항 (c)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며, 더 빠른 시점부터 6개월간 지속됩니다.

(둘) 이 부분에 따라 전적으로 보고하는 모든 기자에게 § 705.18(a) (상품 수입업자)와 40 CFR 704.3 정의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로 간주되며, 제출 기간은 2027년 1월 31일, 즉 본 조항 (c)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며, 12개월간 지속됩니다.

(셋) EPA는 제출 기간을 알리고 이 (c)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문서를 연방 관보 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FR 문서 2026-07062 제출 4월 10일; 오전 8:45]

청구 코드 6560-S0-P